# gh

# 교양수학 학생민원 사례집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박병도 교수 (043-261-2721)

2023. 11. 13.

□ 2023-2 제1차 수학II 02분반 학생민원 제1호

#### ○ 민원취지

- ① 수업 중간에 학생의 생리적인 필요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강의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② 이 경우 출석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

#### ○ 수업계획서상 규정사항

- ① 수업중 이석할 경우 다시 돌아와 사후 보고할 경우 결석처리
- ② 사후 보고하지 않는 이석의 경우 적발시 결석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수업태도 정책에 의해 감점처분
- ③ (언급사항) 수업 시작 전 양해를 구하는 경우나, 사후 보고의 경우 사정을 들어보고 사안에 따라 참작할만 하다면 결석처리 하지 않음

Attendance Policies: (3) If you responded to an attendance call and leave the classroom (even if you come back later) while the lecture is still going on, you will be considered to be absent for that attendance call if you report later to the instructor that you left during the class within that day's class. If you don't report and your arbitrary and sudden leave gets caught, you will be considered to be absent for that day's class and it will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classroom attitude policies.

## ○ 검토결과: 불수용

## ○ 이유

## 가.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u>학점당</u>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충북대학교 학칙』제52조(교육과정) ① (생략)
- ②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6조(수업시간) <u>수업시간은 50분 단위</u> 또는 75분 단위로 운영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업시간 편성지침 에 따른다. <개정 2007. 7. 27.,2018. 1. 30.>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50조(출석관리) ① <u>교원은 매 시간 학생</u> 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관리부(서식 제7호)에 등재한다.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51조(수업일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원은 매 학기 종료와 동시에 출석을 집계하여 출석이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F"급으로 처리하고 대학장은 출석일수 미달자 명단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 ② (생략)

## 나. 제도의 취지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업진행 중 강의실 이탈에 대한 결석처리를 수업계획서상 규정하고 시행하는 취지는 반복적인 학생 출입으로 인한 산만한 학습분위기에 의해 강의하고 있는 담당교수나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므로, 출결관리를 강화 시행함을 통해 강의실내 집중하기 좋은 학습분위기를 유지하여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실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후 강의실 내 면학분위기는 크게 향상되었으며, 생리적 이유는 그 밖의 긴급한 이유는 정상적인 강의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52조(공결승인)제1항을 근거로 사유를 소명하여 공결승인을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혹은 사후 신고한경우 정상을 감안하여 결석처리를 면하도록 하여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 구제받이야 하는 불편으로 인

한 권익 침해 대비 이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나머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 당교수의 수업권이라는 공익이 우월함이 명백함.

#### 다. 기본권 보장의 상대성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문언의 의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행사는 헌법질서와 공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나에게는 술마시고 운전할 자유가 있다. 소주 1병 마시는 정도로는 운전하면서 미소한 실수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칙금, 벌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나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기본권 침해이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임. 다른 한편, 『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따라 담당교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몇몇 개인의 신체의 자유만을 우선하여 보장하고 다수가 영향을 받는면학분위기 조성에 소홀하는 것이 이 법령이 의미하는 공정이라고 볼 수 없음.

라. 수업시간 중 강의실 이탈에 대한 결석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위 법령에 따르면 1학점을 이수하였다는 법령상 의미는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이수하였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1시간 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50분의 강의 전체를 이수하여야만 하고, 총50분에서 단 1초라도 모자란다면 이를 근거로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결석으로 표시하여 해당차시 이수여부를 "부"로 판정할 직권이 있음.

(소결론) 따라서 <u>강의실 이탈 즉시 결석처리 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수업계획</u> 서상 문언은 타당함.

※ 학생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등 생리적인 필요는 강의시작 전에 해소하여야만 하며, 수업시간 중 생리적인 필요 때문에 불가피한 강의실 이탈이 필요하다면 강의를 이수할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닌 것이므로 결석 후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조(공결승인)제1항제8호를 근거로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를 병원

의 진료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여 공결승인을 받을 수 있음.

마. 수업시간 중 생리적 필요를 이유로 강의실을 이탈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결석처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담당교수가 학생들의 긴급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사후 보고 또는 이탈 후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52조(공결승인)제1항에 따른 공결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2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또는 담당교수의 수업계획서 규정사항 집행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면 『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사유)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 결정문을 근거로 제도 변경을 담당교수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소결론) 담당교수는 실정법에 따라 강의를 운영할 수 밖에 없음.

#### 바. 결론

이와 같다면 『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 『충북대학교 학칙』제52조,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6조 및 제50조에 따라 <u>민원사유는 적법한 근거가 있거나</u> 그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음.

## □ 2023-1 제1차 수학I 02분반 학생민원 제1호

O **민원취지**: 강의에서 영어 사용이 많다. 수학 자체만 공부하기에도 어려운데 영어와 특수문자까지 병용되니 더 어렵게 느껴진다. 조금 줄여 달라.

## ○ 검토결과: 불수용

O 이유: 강의는 100% 우리말로 진행되고 있고 판서만 영어인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수학 강의방식에서 통상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공과목 공부를 위해 원서와 논문을 읽기 위해서는 수리적 용어들을 영어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방식에

학생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음. 현재의 판서 방식은 교육적으로 매우 적절함.

- □ 2023-1 제1차 수학I 02분반 학생민원 제2호
- **민원취지**: 시험을 한 학기에 4번 보는 것은 너무 많다. 작년 강좌에서 학생들이 제출하였던 과제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하여 올해 이 분반에서도 반드시 같은 일이 반복되리라는 법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 과제물을 신뢰할수 없다는 가정하에 시험을 2번 대신 4번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다. 시험을 2번으로 줄여달라.

####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제1차 중간시험 평균 61.09점, 제2차 중간시험 평균 49.42 점으로 시험을 작은 범위로 나누어 자주 시행하는 것은 이 분반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 2023-1 제1차 수학I 02분반 학생민원 제3호

- 민원취지
- ① 시험일자를 일주일전에 확정하여 스케쥴을 매번 다시 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니 개선하여 달라.
- ② 칠판 글씨체가 필기체여서 알아보기 힘드니 개선하여 달라.

## ○ 검토결과: 불수용

○ 이유: 제1차 시험은 3월 30일에 공지하고 4월 11일에 시행하였음. 제2차 시험은 4월 25일에 공지하고 5월 2일에 시행하여 7일 이전시점 공지하였으나, 이미사전에 3,4장에 대해 시험을 예고한 후 7일 이전 확정공지가 지나치게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진 시험 공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른 한편, 시험 시행일정 관련 학생들의 이견제시도 없었음. 이와 관련 담당교수는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특정 시험일정이 학생들에게 현저히 무리스럽다고 느낀다면 시험관 런 질문 등 청취하는 시점에 학생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담당교수는 강좌 진 행 일정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

아울러 담당교수는 강의실 배정 후 판서 가독성 확인, 제일 뒷열 학생들에 대하여 글씨가 잘 보이는지 구두확인, 칠판 면당 5행 이내 판서 원칙 등 전반적인 가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의 노트도 매주 eCampus에 업로드하고 있음. 하지만 교단 앞 3열은 거의 항상 비어있는 상황임. 이와 같다면 학생이 앞열에 와서 앉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 2023-1 제1차 수학I 02분반 학생민원 제5호

O **민원취지**: 원칙주의적 강좌 운영에는 만족하지만, 수업 분위기에 긴장감이 생기는 부분을 완화하여 달라.

#### ○ 검토결과: 수용

O 이유: 편안한 학습 분위기는 교육 목표 달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음. 다른 한편 담당교수에게는 면학분위기나 수업운영의 공정성 등 원칙이 무너져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목적 달성간의 균형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 2023-1 제1차 수학I 02분반 학생민원 제6호

○ **민원취지**: 판서 영어 단어의 철자 구분이 안되거나 대소문자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판서를 개선하여 달라.

## ○ 검토결과: 수용

O 이유: 간혹 판서의 일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됨. 판서를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학생도 알아보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질문하여 주면 도움이 되겠음.